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영향*

임 하 연¹⁾

박 지 선[†]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움’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 폭력, 피해자다움, 사건 심각성,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1)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 jjipark@sookmyung.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피해자가 전형적인 사회통념상 범죄 피해자로서의 모습이나 태도에 부합하는지를 의미하는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백지연, 윤호영, 2021; van Doorn & Koster, 2019).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데이트 폭력의 위협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치안정책연구소, 2022),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함께 특히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 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 피해자에 있어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 특히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다움’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실제로, 국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5년간 2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치안정책연구소, 2022). 특히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살해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가해자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관련 사람들의 통념은 단순히 추상적 인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사법 판단이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우 등 구체적인 정책과 실무에 영향을 미친다(김태명, 2011; 오주령, 박지선,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지가 사건의 심각성 및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 피해

자에 대한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 인식에 있어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영향으로 인해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용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다움’과 범죄 사건 판단

‘피해자다움’이란 해당 범죄가 발생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상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전형적인 태도나 행동, 사고 등의 특정한 속성을 가리킨다(정대현, 2018; 정찬영 등, 2020).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가해자와 연락 또는 만남을 지속한 경우 등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허민숙, 2017). 이처럼 ‘피해자다움’은 범죄 사건 당시 및 사건이 발생한 전후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언행,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평판에 근거하여 평가되기도 한다(김선희, 2019; 박정난, 2020).

특히 사람들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특정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러한 ‘감정적 피해자 효과(emotional victim effect)’는 주로 피해자에게서 슬픔이나 두려움, 위축 등의 정서적 반응을 기대한다(Ask & Landström, 2010).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홍영오 등, 2015). 따라서, 피해자에게 정형화된 정서적 반응을 기대하는 이러

한 접근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간과하고, 주로 관찰자나 오히려 가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정대현, 2018). 일례로 범죄 피해자가 슬픔보다는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기대위반을 경험하기도 한다(Bosma et al., 2018).

범죄 피해 가운데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주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때로는 경험칙을 매개로 피해자의 특정한 언동이 진술 신빙성 유무 판단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선미, 박용철, 2020). 이때 피해자다운 언행이나 태도, 즉 '피해자다움'이 성범죄 판결에서 경험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어 왔다(박정난, 2020).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당하기도 한다(윤덕경, 김차연, 2015). 또한, 피해자가 별다른 감정 표현이 없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보일 때보다,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경우 더 신뢰할 수 있는 피해자로 평가되었다(van Doorn & Koster, 2019). 더불어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긴장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주체적일수록 피해자답지 않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정찬영 등, 2020).

피해자들은 때로 수사나 재판 등의 형사절차를 거치며 이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정혜옥, 2018). 특히 '피해자다움'에 대한 의심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이수진, 2019),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 없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이명신, 양난미, 2012). 때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에 부합하

는 모습을 재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Larcombe, 2002).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 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후유증을 심화시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다움'을 수행하도록 만든다(김민정 등, 2017).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피해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생존자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피해자보다 더 큰 우울감을 보였으며, 자존감은 더 낮았다(Boyle & Rogers, 2020). 즉,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는 이차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박지선, 강은영, 2021),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그간 '피해자다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성범죄가 아닌 폭행 범죄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있어서도 또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 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안정된 목소리로 감정을 거의 보이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기대에 부합한다고 평가되었으며, 따라서 더 진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Landström et al., 2019). 이러한 '감정적 피해자 효과(emotional victim effect)'는 폭행 피해자에게도 나타났는데, 슬픔보다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으며, 피해자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Bosma et al., 2018). 이처럼 성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이나 폭행 피해자들은 '피해자다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받고,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주로 성범죄 사건에 집중되어 있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

를 확장하여,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도 이러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이후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이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박경은, 유영권, 2017). 그러나 피해자에게서 특정하고 전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이러한 ‘피해자다움’에 기반한 사건 판단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이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거부 의사 명확성은 성폭력 사건보다도 특히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 근거로 더 중요시되는데, 이러한 증거 외적 요인을 중요시할수록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이명신, 양난미, 2012). 그러므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따라서 사건 판단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과 사건 판단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관계에서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저지르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을 일컫는다(이숙정, 권호인, 2021; 홍영오 등, 2015). 데이트 폭력에는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하는데, 우선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을 밀치거나 차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치거나 모욕하는 행위, 성적 폭력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완력이나 위협 등을 이용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Straus et al., 1996).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심리적 외상에 노출될 수 있다(장정윤, 강지현, 2017). 특히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공포나 분노, 무기력 등을 경험하며, 때로는 자해 시도 등의 극단적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성용은, 2021).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인 사이에 적절한 개입이나 중재가 어려워 때로는 살인 등 더 극단적인 범죄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인식되어 심각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김재한, 2019; 이숙정, 권호인, 2021). 이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은 사건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데이트 폭력 가운데 신체적 폭력은 일회성 사건으로 간주되는 반면 정서적 폭력은 비교적 빈번하다고 인식되어 더 심각하게 평가되기도 한다(Toplu-Demirtaş et al., 2022). 또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가 자제력을 상실하였거나 이성을 잃도록 유발되었을 것이라는 인식은, 가해자의 책임이 적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Peters, 2008). 이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국내 데이트 폭력 연구는 주로 데이트 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신지연, 최수미, 2017; 이수정, 김은영,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나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등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판단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

해자의 ‘피해자다움’이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주요하게 연구되어 온 변인 가운데 하나이다 (임채영 등, 2010; 하예지, 서미경, 2014; White et al., 2022). 특히 사건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경찰 개입의 필요성, 법적 처분에 관한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김은영, 2016; Chung & Sheridan, 2021; Scott & Sheridan, 2011; Sorenson & Taylor, 2005; White et al., 2022).

특히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홍영오 등, 2015). 이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을 경우 상황을 견디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박경은, 유영권, 2017), 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책임보다는 오히려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계에 계속 머무르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우현진 등, 2017).

실제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낮게 평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자 체포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Lockwood & Prohaska, 2015). 또한,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연인 간 구애 행위나 사적인 애정 사건 정도로 사건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는 곧 가해자의 책임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귀인으로 이어져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

지는 양상을 보였다(조무용, 김정인, 2016; McKeon et al., 2015). 더불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Witte et al., 2006). 또한 대인간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심각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였다(Eigenberg & Policastro, 2016).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다. 해당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부합할수록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책임은 크게, 피해자 비난은 적게 평가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다움’이 가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게 판단되며, 사건 심각성이 높게 판단될수록 가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다움’이 피해자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게 판단되며, 사건 심각성이 높게 판단될수록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시나리오

본 연구는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의 성인 남녀 총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과 남성 각 80명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20세에서 최대 39세로 평균 30.60세($SD = 4.88$)였다. 연구 참여자는 먼저 인구통계학적 설문에 응답한 뒤, '피해자다움' 여부 조건에 무선험당되어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의 사건 판단 척도에 응답하였다.

연구에서의 시나리오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보이는지의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경험한 데이트 폭력의 횟수, 강도 등 행위 내용 자체는 두 조건에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조건에서는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흐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침착하고 감정적 동요가 없으며 덩덤한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구분지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고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비교적 덩덤한 모습을 보이며 별다른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연구 측정 도구

조작 점검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무선으로 할당된 '피해자다움'에 피해자가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적절히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작 점검은 해당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형적인 사회통념상 범죄 피해자의 통상적 태도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1(전혀 가깝지 않다)부터 7(매우 가깝다) 사이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피해자다움' 부합 조건의 연구 참여자들($M = 5.41$, $SD = 1.26$)이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연구 참여자들($M = 3.94$, $SD = 1.46$)보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해자의 모습이 더 '피해자다움'에 가깝다고 판단하여($t(158) = 6.838$, $p < .001$), 조작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먼저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심각하지 않다, 7: 상당히 심각하다). 가해자 책임 판단은 해당 사건 발생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1(전혀 책임이 없다)부터 7(상당한 책임이 있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피해자 비난 판단은 해당 사건 발생에서 피해자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역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버전 3.5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른 사건 심각성 평가 및 가해자 책임과 피해자 비난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피해자다움’이 각각 사건 판단(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 심각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Hayes, 2017)를 통하여 매개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피해자다움’에 따른 사건 판단에서의 차이

테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 판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보다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피해자일 때, 테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t(158) = 2.351, p < .05$). 한편,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른 가해자 책임과 피해자 비난 판단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번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건 심각성,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판단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 참조). 우선 상관분석 결과, 사건 심각성 판단은 가해자 책임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피해

표 1. 테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 | 피해자다움 <i>M(SD)</i> | 피해자답지 않음 <i>M(SD)</i> | <i>t</i> | <i>df</i> |
|--------|-----------------------|--------------------------|----------|-----------|
| 사건 심각성 | 6.38(.89) | 6.00(1.11) | 2.351* | 158 |
| 가해자 책임 | 6.30(1.23) | 6.18(1.05) | .692 | 158 |
| 피해자 비난 | 2.45(1.90) | 2.28(1.68) | .619 | 158 |

* $p < .05$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 | 1 | 2 | 3 |
|-----------|----------|----------|------|
| 1. 사건 심각성 | - | | |
| 2. 가해자 책임 | .544*** | - | |
| 3. 피해자 비난 | -.330*** | -.286*** | - |
| <i>M</i> | 6.19 | 6.24 | 2.36 |
| <i>SD</i> | 1.02 | 1.14 | 1.79 |
| 왜도 | -1.03 | -1.97 | 1.21 |
| 첨도 | .11 | 4.92 | .46 |

*** $p < .001$

자 비난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데이트 폭력 사건을 심각하다고 판단할수록 가해자의 책임을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가해자 책임은 피해자 비난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가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수록 피해자 비난의 정도는 약했다.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판단 간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

‘피해자다움’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 심각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간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그림 1 참조).

그 결과, ‘피해자다움’이 사건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 = .3750, SE = .1595, p < .05$), 사건 심각성이 가해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 = .6159, SE = .0759, p < .001$). 그러나 매개변인인 사건 심

표 3. ‘피해자다움’이 가해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

| 경로 | Effect | Boot SE | LLCI | ULCI |
|-------------------------|--------|---------|--------|-------|
| 총효과 | | | | |
| 피해자다움 → 가해자 책임 | .1250 | .1807 | -.2319 | .4819 |
| 직접효과 | | | | |
| 피해자다움 → 가해자 책임 | -.1059 | .1548 | -.4117 | .1998 |
| 간접효과 | | | | |
| 피해자다움 → 사건 심각성 → 가해자 책임 | .2309 | .1048 | .0356 | .4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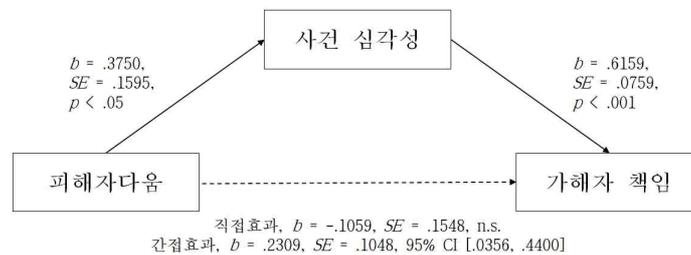


그림 1.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간 사건 심각성의 매개모형

각성이 투입되었을 때, ‘피해자다움’은 가해자 책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 = -.1059, SE = .1548, n.s.$).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사건 심각성의 완전매개효과가 드러났다. 즉, 테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게 판단되었으며, 사건의 심각성이 높게 판단될수록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다움’과 피해자 비난 판단 간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

이번에는 ‘피해자다움’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 심각성이 매개하는지 검증

하였다(표 4, 그림 2 참조). 그 결과, ‘피해자다움’이 사건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 = .3750, SE = .1595, p < .05$), 사건 심각성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 = -.6128, SE = .1328, p < .001$). 그러나 사건 심각성이 투입되었을 때, ‘피해자다움’은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 = .4048, SE = .2709, n.s.$).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사건 심각성의 완전매개효과가 드러났다. 즉, 테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게 판단되었으며, 사건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피해자 비난을 더 약하게 하였다

표 4. ‘피해자다움’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

| 경로 | Effect | Boot SE | LLCI | ULCI |
|-------------------------|--------|---------|--------|--------|
| 총효과 | | | | |
| 피해자다움 → 피해자 비난 | .1750 | .2829 | -.3837 | .7337 |
| 직접효과 | | | | |
| 피해자다움 → 피해자 비난 | .4048 | .2709 | -.1304 | .9399 |
| 간접효과 | | | | |
| 피해자다움 → 사건 심각성 → 피해자 비난 | -.2298 | .1112 | -.4710 | -.03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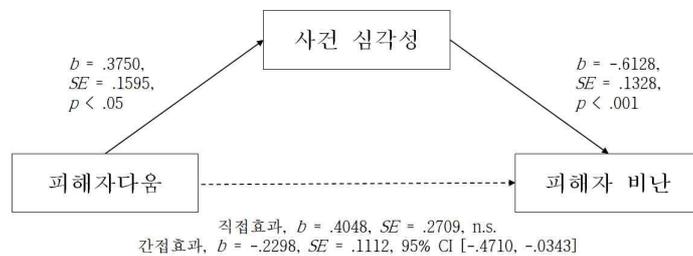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다움’과 피해자 비난 간 사건 심각성의 매개모형

논 의

연구 결과, 우선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즉,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침착함을 유지하며 별다른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감정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경우에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그간 성범죄에 주로 집중되어 연구되었던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 나타나며, 피해자에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기대하는 ‘감정적 피해자 효과(emotional victim effect)’가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피해자다움’과 사건 판단 사이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게 판단되며, 사건 심각성이 높게 판단될수록 가해자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이는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가 가해자 책임이나 피해자 비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데이트 폭력 사건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독립표본 t 검증에서도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른 사건 심각성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가해자 책임과 피해자 비난 판단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데이트 폭력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사건의 심각성 판단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건의 심각성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책임귀인이나 피해자 비난 등 사건에 관한 판단이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나 도움 요청 등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Barrett & Pierre, 2011; Reyns & Englebrecht, 2010; Witte et al., 2006).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그 심각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김재한, 2019; 이숙정, 권호인, 2021).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더불어,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가해자 처벌이나 형량 판단 사이에서도 매개 역할을 하는지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는 수사나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종종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의심, 사생활 침해 등 이차 피해와 연결되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김민정 등, 2017; 이명신, 양난미, 2012; 정혜욱, 2018). 특히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는 등 피해자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예림, 박지선, 2021; Bosma et al., 2018; Landström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나 강요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관이나 판사 등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배심원을 교육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즉,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데

이트 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박경은, 유영권, 2017; 홍영오 등, 2015),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기대한다거나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른 편향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무자나 배심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데이트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외에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행동 등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이한울, 박지선, 2022; 홍영오 등,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상대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데이트 폭력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데이트 폭력 유형 가운데 정서적, 성적 폭력보다는 신체적 폭력에 주로 연구가 집중되어 온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오주령, 박지선, 2019). 따라서, 향후에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정서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른 사건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내용이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를 막론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러한 엄벌 요구가 크게 감정적 동요 없고 비교적 덤덤한 피해자의 모습과는 조화롭지 못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나리오 안에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내용의 포함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며 팔을 잡아 쥐고 넘어뜨리는 등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 행위 자체는 피해자다움 여부 조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와는 별개로, 조건 별로 상이하게 제시된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 행위의 강도(severity)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데이트 폭력 행위의 강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는지, 또한 이것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나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판단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주의 특성상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20, 30대였음을 고려해 볼 때, 연구 결과가 4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향후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피해자다움'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던 성범죄나 본 연구와 같은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와 같은 사건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전통적 성역할 태도(Lockwood & Prohaska, 2015), 폭력에 대한 허용도(Eigenberg & Policastro, 2016) 등 판단자의 특성이나 태도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도 관련이 높으면서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보이는 권위주의(Peterson & Zurbriggen, 2010)가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만성적인 부적절감을 경험하며 스스로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관계에 집착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촉발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Lawrence & Taft, 2013). 이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 판단과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폭력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5(3), 117-139.
- 김선희 (2019). 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란 있는가?: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여성학논집*, 36(1), 3-25.
- 김은영. (2016). 스토킹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찰개입의 필요성 판단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3), 93-112.
- 김제한 (2019).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9(2), 1-27.
- 김태명 (2011).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5-44.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정난 (2020).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검토.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12(2), 207-238.
- 박지선, 강은영 (2021). 성범죄 피해자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판단에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이 미치는 영향. *이화젠더법학*, 13(1), 1-34.
- 백지연, 윤호영 (2021). 방송 뉴스가 재현하는 성범죄 피해 여성 이미지에 대한 키프레임 분석: 가상물, 자료화면을 통한 피해자다움의 재생산과 익명-실명 보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2), 75-113.
- 성용은 (2021). 데이트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113-130.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15-335.
- 윤덕경, 김차연 (2015). 성폭력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7(1), 73-107.
- 이명신, 양난미 (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3(2), 149-197.
- 이선미, 박용철 (2020).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 이수정, 김은영 (2022).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젠더감수성의 역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7(1), 1-21.
- 이수진 (2019).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이해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 이슈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3), 35-62.
- 이숙정, 권호인 (2021).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391-410.
- 이예림, 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75-97.
- 이한울, 박지선 (2022). 특권의식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 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55-575.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장정윤, 강지현 (2017). 대학생의 대상관계수준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307-327.
- 정대현 (2018). 피해자다움을 왜곡한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의 부당성. *여성학논집*, 35(2), 87-112.
- 정찬영, 김현정, 김태경, 박상희 (2020).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 주체성과 판단자 성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167-194.
- 정혜욱 (2018).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법학연구*, 18(3), 55-88.
- 조무용, 김정인 (2016). 대학생들의 스토킹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지각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3), 341-364.
- 치안정책연구소 (2022). **치안전망 2023**. https://psi.police.ac.kr/police/board/view.do?bbsId=BBSMSTR_00000000159&pageIndex=2&nttId=158870&menuNo=116001000000.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1-31.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sk, K., & Landström, S. (2010). Why emotions matter: Expectancy violation and affective response mediate the emotional victim effect. *Law and Human Behavior*, 34(5), 392-401.
- Barrett, B. J., & Pierre, M. S. (2011). Variations in women's help seeking in respons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a Canadian population-based study. *Violence Against Women*, 17(1), 47-70.
- Bosma, A. K., Mulder, E., Pemberton, A., & Vingerhoets, A. J. (2018). Observer reactions to emotional victims of serious crimes: Stereotypes and expectancy violations.

- Psychology, Crime & Law*, 24(9), 957-977.
- Boyle, K. M., & Rogers, K. B. (2020). Beyond the rape "victim" - "survivor" binary: How race, gender, and identity processes interact to shape distress. *Sociological Forum*, 33(2), 323-345.
- Chung, K. L., & Sheridan, L. (2021). Perceptions of stalking in Malaysia and England: The influence of perpetrator-target prior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 111064.
- Eigenberg, H., & Policastro, C. (2016). Blaming victims in cases of interpersonal violence: Attitudes associated with assigning blame to female victims. *Women & Criminal Justice*, 21(1), 37-54.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Landström, S., Ask, K., & Sommar, C. (2019). Credibility judgments in context: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on, presentation mode, and statement consistency. *Psychology, Crime & Law*, 25(3), 279-297.
- Larcombe, W. (2002). The 'Ideal' victim v successful rape complainants: Not what you might expect. *Feminist Legal Studies* 10, 131-148.
- Lawrence, A. E., & Taft, C. T. (2013). Sham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2), 191-194.
- Lockwood, D., & Prohaska, A. (2015). Police officer gender and attitudes toward intimate partner violence: How policy can eliminate stereotype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10(1), 77-90.
- McKeon, B., McEwan, T. E., & Luebbers, S. (2015). "It's not really stalking if you know the person": Measuring community attitudes that normalize, justify and minimise stalking.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2(2), 291-306.
- Peters, J. (2008). Measuring myths about domestic violenc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omestic violenc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6(1), 1-21.
- Peterson, B. E., & Zurbriggen, E. L. (2010). Gender, sexuality, an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78(6), 1801-1826.
- Reyns, B. W., & Englebrecht, C. M. (2010). The stalking victim's decision to contact the police: A test of Gottfredson and Gottfredson's theory of criminal justice decision mak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5), 998-1005.
- Scott, A. J., & Sheridan, L. (2011). 'Reasonable' perceptions of stalking: The influence of conduct severity and the perpetrator-target relationship. *Psychology, Crime & Law*, 17(4), 331-343.
- Sorenson, S. B., & Taylor, C. A. (2005). Female aggression toward male intimate partners: An examination of social norms in a community-based samp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1), 78-96.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 Family Issues*, 17(3), 283-316.
- Toplu-Demirtaş, E., Öztür, G., & Fincham, F. D. (2022). Perceptions of dating violence: Assessment and antece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2), 48-75.
- van Doorn, J., & Koster, N. N. (2019). Emotional victims and the impact on credibility: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7, 74-89.
- White, E., Longpré, N., & Stefanska, E. B. (2022). Stalking behaviors presented by ex-intimate stalkers: A victim'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7-8), NP5074-NP5093.
- Witte, T. H., Schroeder, D. A., & Lohr, J. M. (2006). Blame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6), 647-667.
- 논문 투고일 : 2023. 05. 03
1 차 심사일 : 2023. 05. 15
2 차 심사일 : 2023. 06. 26
게재 확정일 : 2023. 07. 21

The Effect of Victim Typicality on the Judgment of Dating Violence Cases

Hayeon Lim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on offense judgment differing by victim typicality has usually focused on sexual violence, and studies on victim typicality of dating violence remain scarce. However, the social concern for the recent increase of dating violence cases demands research on social stereotypes of dating violence victims, especially focusing on how they affect judgments of dating violence cases. We examined if judgment of dating violence cases differed by victim typicality. The results based on 160 adults (80 females and 80 male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victim typicality, the more seriously the offense was evaluated. In addition, the level of offense serious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typicality and judgment of offender responsibility and victim blame. The higher the level of victim typicality, the more seriously the offense was evaluated, and the bigger the offender responsibility and the less the victim was blamed. Finally,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nd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for jurors.

Key words : dating violence, victim typicality, offense seriousness, offender responsibility, victim blame